

##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

議案 番號	
----------	--

提案年月日 : 1992. 11.

提案者 :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長

### 1. 提案經緯

가. 第158回國會(臨時會) 第5次 本會議(1992. 8.12)의 議決로 構成된

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가 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관하여 7個의 合

意事項과 4個의 未合意事項의 審議結果를 第159回國會(定期會) 第1次

本會議(1992. 9.14)에서 報告한 바 있음.

나. 第159回國會(定期會) 第2次 本會議(1992.10. 2)의 議決로 再構成된

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第2次 會議(1992.10.12)에서 法案審議班을

構成하고 選舉管理委員會法의 改正審議를 委任함.

다. 1992年10月31日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第3次 會議에서 法案審議

班으로부터 大統領選舉法에 대한 審議結果를 報告받고 同審議班에서

成案한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을 審議한 바 이를 委員會案으로

採擇하기로 議決함.

## 2. 提案理由

各種 選舉時 選舉法違反行爲等에 대한 監視·園束權을 부여하여 選舉管理委員會의 權限을 強化하고, 中央選舉管理委員會 事務總長의 職級을 國務委員級으로 格上하는 등 事務機構의 補強과 選舉研修院設置 및 所屬公務員의 獨自的인 採用등으로 專門性을 提高시킴으로써 選舉事務의 效率的인 管理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 3. 主要骨子

- 가.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市·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기 위하여 둔 각 1人の 常任委員이 委員長의 命을 받아 事務處 또는 事務局의 事務를 監督할 수 있도록 그 職務範圍를 擴大함(案 第6條第1項).
- 나.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·職員이 職務遂行중에 選舉法違反行爲를 발견한 때에는 中止·警告·是正命令을 하도록 하고, 그 違反行爲가 選舉의 公正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中止·警告·是正命令을 불이해하는 때에는 搜查依賴 또는 告發할 수 있도록 함(案 第14條의 2).
- 다. 中央選舉管理委員會 事務總長 및 事務次長의 職級을 각각 國務委員

및 次官級으로 上向調整하고, 選舉局과 公報官을 選舉管理室로 統合하여 選舉管理室長(1級)밑에 課와 2級 또는 3級인 選舉管理官 및 弘報管理官 각 1人을 두도록 하며, 區·市·郡選舉管理委員會의 事務課를 事務局 또는 事務課로 變更하여 局長은 4級, 課長은 4級 또는 5級으로 調整하는 등 選舉管理委員會의 事務機構를 補強함(案 第15條第4項·第6項 내지 第8項 및 第10項).

라. 選舉·政黨事務에 관한 公務員의 教育과 選舉·政黨關係者에 대한 研修를 위하여 事務處에 選舉研修院을 設置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함(案 第15條의 2).

마. 選舉管理委員會 소속 公務員은 選舉管理委員會가 獨自的으로 採用·充員하도록 하되, 試驗의 일부 또는 전부를 總務處長官에게 委託할 수 있도록 함(案 第15條의 3).

바. 各級選舉管理委員會가 選舉事務등에 관하여 關係行政機關에만 필요한 指示 및 事務協助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을 公共團體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되, 事務協助要請에 있어 人員·裝備 등이 필요한 경우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는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, 公共團體에 대하여는 協助要求를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協助機能을 強化함(案 第16條).

사.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選舉·國民投票 및 政黨關係法律에 대한 制定

·改正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會에 그 의견을 제출할  
수 있도록 하여 同 法律에 대한 法執行機關의 의견반영 기회를 明文  
化함(案 第17條第2項).

아. 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指導·圓束業務 등 選舉事務의 效率的 遂行

을 위하여 各種 選舉 및 國民投票期間(準備期間 포함)중 選舉管理委  
員會 소속公務員과 派遣·委囑公務員에게 特別精勵金을 支給할 수 있  
도록 함(案 第19條의 2).

法律 第 號

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

選舉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.

第6條第1項중 "委員長을 補佐하기 위하여"를 "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事務處 또는 事務局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"로 한다.

第11條第3項중 "事務課長 또는 委嘱幹事"를 "事務局長 · 事務課長 또는 委嘱幹事"로 한다.

第14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14條의 2(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中止 · 警告等)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 · 職員은 職務遂行중에 選舉法違反行爲를 발견한 때에는 中止 · 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, 그 違反行爲가 選舉의 公正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中止 · 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不履行 하는 때에는 管轄搜查機關에 搜查依賴 또는 告發할 수 있다.

第15條第4項중 "次官과"를 "國務委員의 報酬와"로 하고, 同條第6項중 "1級 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."를 "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

報酬와 同額으로 한다."로 하며, 同條第7項중 "公報官·企劃管理官·選舉局 및 政黨局을 두고 企劃管理官 밑에 擔當官을, 각 局에 課를 두되"를 "選舉管理室·企劃管理官 및 政黨局을 두고 選舉管理室에 課와 選舉管理官 및 弘報管理官 각 1人을, 企劃管理官 밑에 擔當官을, 局에 課를 두되"로 하고, 同條第8項중 "公報官·企劃管理官 및 局長"을 "選舉管理室長은 1級, 企劃管理官·局長·選舉管理官 및 弘報管理官"으로 하며, 同條第10項 중 "事務課를 두며, 課長은 4級 또는 5級"을 "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두며 局長은 4級, 課長은 4級 또는 5級"으로 하고, 同條第16項중 "事務課長"을 "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"으로 한다.

第15條의 2 및 第15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15條의 2(選舉研修院) ①選舉·政黨事務에 관한 公務員의 教育과 選舉·政黨關係者에 대한 研修를 위하여 事務處에 選舉研修院을 둘 수 있다.

②選舉研究院에 院長 1人을 두며, 2級 또는 3級인 一般韓國家公務員으로 捕한다.

③選舉研修院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.

第15條의 3(公務員의 採用등) ①選舉管理委員會 소속公務員의 任用을 위한 採用試驗·昇進試驗·기타 試驗은 國家公務員法을 적용하여 事務總長이 실시하되, 試驗의 일부 또는 전부를 總務處長官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同法 第34條·第40條의 2第5項 및 第42條第2項의 "總務處長官"은 각각 "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"으로 본다.

②國會·法院 및 行政府 소속公務員을 轉入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試驗을 거쳐 任用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職級에 대한 任用資格要件 또는 昇進所要最低年數·試驗科目이 동일할 때에는 그 試驗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免除할 수 있다.

第16條의 題目 "(事務指示등)"을 "(選舉事務등에 대한 指示·協助要求)"로 하고, 同條第2項 및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事務를 위하여 人員·裝備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行政機關에 대하여는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, 公共團體 및 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(開票事務從事員을 委嘱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대하여는 協助要求를 할 수 있다.

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示를 받거나 協助要求를 받은 行政機關·公共團體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第17條중 "選舉(委託選舉를 포함한다)"를 "選舉(委託選舉를 포함한다. 이하 이條에서 같다)"로 하고,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, 國民投票 및 政黨關係法律의 制定·改正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會에 그 의견을 書面으로 제출 할 수 있다.

第19條第1項第2號中 "실시에"를 "準備 및 실시에"로 한다.

第19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19條의 2(特別精勵金 支給) ①각종 選舉 및 國民投票期間(準備期間을 포함한다)중 選舉管理委員會 소속公務員 및 派遣·委囑公務員에 대하여는 算의 범위안에서 特別精勵金을 支給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는 特別精勵金은 國家가 실시하는 選舉 및 國民投票의 경우에는 國家가, 地方自治團體의 選舉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,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을 管轄하는 選舉管理委員會의 上級選舉管理委員會 소속 公務員등에 支給하는 特別精勵金은 國家가 부담한다.

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精勵金은 選舉實施可能期間의開始日 전 3月부터 選舉日及 1月의 範圍내에서 支給하되, 選舉類型別

支給對象·支給期間 및 支給額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.

## 附 則

- ①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
- ②(經過措置) 이 法 施行당시 事務機構의 事務와 당해 事務를 分掌하던 機構 및 定員은 이 改正法律에 의한 規則이 制定·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.

한국

新·舊條文對比表

現 行	改 正 案
<p>第6條(常任委員) ①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·道選舉管理委員會에 <u>委員長을</u> 補佐하기 위하여 각 1人の常任委員을 둔다.</p> <p>②~③ (성략)</p>	<p>第6條(常任委員) ①----- -----<u>委員長</u> 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事務處 또는 事務局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----- ②~③ (現行과 같음)</p>
<p>第11條(會議召集) ①~②(성 략) ③區·市·郡選舉管理委員會와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翱位 또는 事故가 있을 경우 委員長·副委員長 또는 臨時委員長을 互選하기 위한 會議召集은 事務課長 또는 委嘱幹事が 이를 代行한다.</p>	<p>第11條(會議召集) ①~② (現行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事務局長·事務課長 또는 委嘱幹事----- -----</p>
<p>(新 設)</p>	<p>第14條의 2(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中止·警告等)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·職員은 職務遂行중에 選舉法違反行爲를 발견한 때에는 中止·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,</p>

그 違反行爲가 選舉의 公正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中止·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不履行하는 때에는 管轄搜查機關에 搜查依賴 또는 告發할 수 있다.

第15條(事務機構등)

- ①~③ (성 약)  
④事務總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과 同額으로 한다.  
⑤ (성 약)  
⑥事務次長은 1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.  
⑦事務處에 公報官·企劃管理官·選舉局 및 政黨局을 두고 企劃管理官 밑에 擔當官을, 각 局에 課를 두되 事務總長·事務次長·局長을 직접 补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局에 속하지 아니하는 課 1個를 둘 수 있다.  
⑧公報官·企劃管理官 및 局長은 2級 또는 3級, 課長은 4級, 擔當官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. 다만, 擔當官 중 1人은 3級상당 또는 4級상당인 別定職 國

第15條(事務機構등)

- ①~③ (現行과 같음)  
④-----  
----- 國務委員의 報酬와 -----  
⑤ (現行과 같음)  
⑥-----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.  
⑦----- 選舉管理室·企劃管理官 및 政黨局을 두고 選舉管理室에 課와 選舉管理官 및 弘報管理官 각 1人을, 企劃管理官 밑에 擔當官을, 局에 課를 두되-----  
-----  
-----  
⑧選舉管理室長은 1級, 企劃管理官·局長·選舉管理官 및 弘報管理官-----  
-----  
-----

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.

⑨(성 략)

⑩區·市·郡選舉管理委員會에 事務課를 두며, 課長은 4級 또는 5級인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.

⑪~⑯ (성 략)

⑯ 第9項의 事務局長 및 第10項의 事務課長과 第15項의 委嘱幹事는 당해委員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·監督한다.

(新 設)

⑨(現行과 같음)

⑩-----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두며 局長은 4級, 課長은 4級 또는 5級-----

⑪~⑯ (現行과 같음)

⑯-----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-----

第15條의 2(選舉研修院) ①選舉·政黨事務에 관한 公務員의 教育과 選舉·政黨關係者에 대한 研修를 위하여 事務處에 選舉研修院을 둘 수 있다.

②選舉研修院에 院長 1人을 두며,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.

③選舉研修院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.

(新 設)

第15條의 3(公務員의 採用등) ①選舉管理委員會 소속公務員의 任用을 위

한 採用試驗 · 昇進試驗 · 기타 試驗  
은 國家公務員法을 적용하여 事務總  
長이 실시하되, 試驗의 일부 또는  
전부를 總務處長官에게 委託하여 실  
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同法 第34條  
· 第40條의 2第5項 및 第42條第2項  
의 "總務處長官"은 각각 "中央選舉  
管理委員會事務總長"으로 본다.

②國會 · 法院 및 行政府 소속公務員  
을 轉入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試驗  
을 거쳐 任用하여야 한다. 다만, 해  
당 職級에 대한 任用資格要件 또는  
昇進所要最低年數 · 試驗科目이 동일  
할 때에는 그 試驗의 일부 또는 전  
부를 免除할 수 있다.

### 第16條(事務指示등)

#### ①(성 략)

②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職務遂行상  
의 필요에 따라 관계 行政機關에 事  
務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 第16條(選舉事務등에 대한 指示 · 協 助要求)

#### ①(現行과 같음)

②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事務를  
위하여 人員 · 裝備의 지원등이 필요  
한 경우에는 行政機關에 대하여는  
指시 또는 協助要求를, 公共團體 및  
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  
關(開票事務從事員을 委嘱하는 경우  
에 한한다)에 대하여는 協助要求를

③第1項의 指示나 第2項의 事務協助의 요청을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第17條(法侖에 관한 의견표시등) 行政機關이 選舉(委託選舉를 포함한다) · 國民投票 및 政黨關係法侖을 制定 · 改正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法侖案을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.

(新 設)

第19條(經費의 부담) ①國家가 실시하는 選舉 · 國民投票 및 政黨에 관한 事務에 요하는 다음 各號의 經費와 地方自治團體의 選舉에 관한 事務중統一的인 수행을 위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市 · 道選舉管理委員會가 행하는 指示와 資料 · 裝備등의 제공에 소요되는 經費는 國家가 부

할 수 있다.

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指示를 받거나 協助要求를 받은 行政機關 · 公共團體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第17條(法侖에 관한 의견표시등) ①--  
-----選舉(委託選舉를 포함한다).  
이하 이 條에서 같다)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 · 國民投票 및 政黨關係法律의 制定 · 改正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會에 그 의견을 書面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第19條(經費의 부담)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담하고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支出하여야 한다.

1. (생 략)

2. 選舉 및 國民投票의 실시에 필요한 經費

3.~7. (생 략)

②~③(생 략)

(新 設)

-----

-----

-----

1. (現行과 같음)

2. ----- 準備 및 실시에

-----

3.~7. (現行과 같음)

②~③(現行과 같음)

第19條의 2(特別精勵金 支給) ①각종

選舉 및 國民投票期間(準備期間을 포함한다)중 選舉管理委員會 소속公

務員 및 派遣·委嘱公務員에 대하여는 應算의 범위안에서 特別精勵金을

支給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는 特別精勵金은 國家가 실시하는 選舉

및 國民投票의 경우에는 國家가, 地方自治團體의 選舉의 경우에는 당해

地方自治團體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을 管轄하는

選舉管理委員會의 上級選舉管理委員會 소속 公務員등에 支給하는 特別

精勵金은 國家가 부담한다.

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精勵金은 選舉實施可能期間의 開

始日전 3月부터 選舉日후 1月의 範  
圍내에서 支給하되, 選舉類型別 支  
給對象·支給期間 및 支給額등에 관  
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  
員會 規則으로 정한다.

한국